

전주지방법원 2022. 7. 12 선고 2021가단20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

담당변호사 한지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우승원, 진현덕

변 론 종 결 2022. 6. 28.

판 결 선 고 2022. 7. 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지분에 관하여 2020. 3. 16.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11,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소외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1가소 58745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 11. 23. “C은 원고에게 16,795,882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 2001. 2. 9.부터 2011. 9.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아, 2021. 7. 5. 기준 C에 대하여 32,843,060원(=원금 15,000,000원 + 지연손해금 17,108,210원 + 미수금 734,85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C의 상속재산분할 등

- 1) 부친인 D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남기고 2020. 3. 1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로는 피고와 C을 비롯하여 4명의 자녀들이 있다.
- 2) 피고는 2021. 4. 2.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6.자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피고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21. 4. 2. 근저당권자 E의 근저당권(2021. 4. 1.자 해지, 피담보채권 변제액 10,000,000원) 등을 말소하고, 같은 날 소외인에게 2021. 3. 30.자 매매를 원인(매매대금 56,000,000원)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의 무자력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를 기준으로 C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4 상속지분(약 11,500,000원)과 전주시 덕진구 F아파트 상가 G호(약 14,603,305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에,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32,000,000여원의 채무, H조합에 대한 26,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무,

소외인에 대한 27,000,000원의 전세보증금반환채무 등 적극재산을 초과한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강제1 내지 6, 을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당시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작성하였고, 그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곤란하게 하였는바, 피고와 C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1/4씩 나누기로 하되, 왕래가 뜸한 형제들 사이에 등기의 편의상 피고 단독명의로 상속등기를 한 것뿐이며, 실제로 C(처 I)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9,000,000원을 분배하였는바,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선의라고 주장한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인들과 합의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후 상속지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분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들의 관계, 이전등기 및 송금경위 등에 비추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C의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고 이를 자신이 아닌 배우자에게 받도록 한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반복하기 어렵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 범위

1)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러한 사정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와 C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하여야 한다.

2) 앞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56,000,000원에서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10,000,000원을 공제한 46,000,000원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1,5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해야 할 금액은 11,500,000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교